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2025. 4. 29.

사회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5년 4월 14일

나. 제출자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: 2025년 4월 21일

라. 상정일자: 제26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(2025. 4. 28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차문철 생활환경국장)

가. 제안이유

- 주차장 실태조사 및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을 규정하고 거주자우선주차구획 공유주차 요금 신설 등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조문 신설(안 제1조의4)
- 나.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일반의 이용 제공 등 조문 신설(안 제21조의5, 6)
- 다. 거주자우선주차구획 공유 활성화를 위한 요금제 신설(안 별표 1의2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류데레사)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

- 영등포구의 만성적인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을 개방 근거를 마련하고, 노외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주차요금 인상, 공유주차 확대 및 「주차장법」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,

□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
- 안 제1조의4(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실태조사)는 법 제3조에서 구청장에게 “수급 실태조사(2003.12.31. 신설)” 및 “안전관리실태조사(2019.12.24. 신설)” 실시의무를 부여함에 따라 해당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항을 신설함. 참고로, 수급실태조사는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었으며, 안전관리실태조사는 올해부터 시행 예정이라 함.
- 안 제21조의5(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에의 제공)는 주택가 주차난 완화 등을 위하여 신설한 것으로, 제1항은 법 제19조제2항, 제13항 및 「주차장법 시행령」 제11조의2제1호제나목에 따라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이며, 제2항 및 제3항은 법 제19조의3제1항이 근거가 될 것으로 판단됨.
- 안 제21조의6(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의 감면)은 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이니만큼,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사항에 해당하면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.
- 안 [별표1의2](거주자 등 전용주차구획 주차요금표)의 주요개정 내용은 ▲노외 거주자 우선주차구획 주차요금 인상 ▲노상 거주자우선주차구획 공유주차 확대를 위한 것임.
 - 현행 조례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주차요금을 노상, 노외(자투리땅, 부설주차장 개방)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규정하였으나, 개정안에서는 주차요금을 노상·노외로 구분하였으며, 노외 주차요금 중 거주자는 1만원, 상근자(직장인)는 2만원씩 인상함.
 - 주차요금 규정에 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, 노상·노외 공영주차장의 경우 법에서 주차요금의 요율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. 한편, 부설주차장의 경우 조례로 주차요금의 요율 등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았으나,
 -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“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에게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”고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경우도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경우 공영주차장으로 보아 조례로 주차요금을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이며,
 - 법에서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의 상한을 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, 거주자우선주차

구획 중 노외 주차요금 인상에 관해서는 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.

- 집행부서에 따르면 노외 주차요금 책정 기준은 ▲공영노외주차장 5급지 주차요금과의 형평성 제고 ▲민간의 자투리땅 제공 유도를 위한 보상책(운영수입금 귀속) 강화 등이 라 밝힘. 한편, 영등포구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시행 당시(2004. 8. 1.)의 주차요금을 현재까 지 유지(약 21년)한 것으로 파악됨.

- 참고로, 영등포구는 자투리땅을 제공한 토지소유주에게 “운영수입금 귀속 또는 재산세 면제” 중 하나를 보상으로 제공하고 있음.

- 또한, 2025년 4월 기준 영등포구 노외 거주자우선주차구획 기준으로 주차요금 인상 시 한 달 기준 1,240만원, 연간 약 1억 5,000만원의 세입이 증가될 것으로 추산됨.

○ 안 [별표1의2] 기타란 제3호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중 “지정주차 공유제(가칭)”를 신설 한 것으로 「주차장법 시행규칙」 제6조의2에 근거함.

- 집행부서에 따르면 지정주차 공유제는 상가 손님 차량의 단속으로 관련 민원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도입하고자 하는 것으로, 일반 주차요금에서 2만원을 추가로 납부하면 손님·방문객 등 공동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.

- 이는 소상공인 사업환경 개선의 효과로도 이어질 것으로 판단됨.

○ 안 부칙은 “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”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안 [별표1의2]에서 노외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주차요금도 “공포한 날”(5월 예정)부터 시행임.

- 한편, 2025년 하반기(6개월)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정기접수를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사되기 전인 4월 7일~18일 동안 받았음.

- 이에 따라 집행부서는 거주자 등 전용주차구획 주차요금 중 인상된 노외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것이라 밝힘.

- 이는 공포일부터 인상된 요금을 적용하도록 규정된 조례를 따르지 않는 문제가 발생함.

□ 검토결과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에 대한 개방근거 마련 및 공유 주차 확대를 통하여 영등포구의 주차구획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시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며,

○ 노외 거주자 등 전용주차구획 주차요금 인상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이 시행 후 21년 동안 동일한 요금을 적용한 점 및 공영주차장 요금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

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- 또한, 인상된 요금 적용 시기와 관련하여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공포가 5월 중으로 예상됨에 따라, 집행부서의 의견대로 인상된 노외 주차요금을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기 위해서는 안 [별표1의2]에 대해서는 부칙으로 시행일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.

4. 심사결과: 수정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522	관련 번호
----------	-----	----------

제안연월일: 2025. 4. 28.

제안자: 이예찬 의원 외 1명

1. 수정이유

- 인상된 노외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주차요금과 관련하여,
2025년 하반기 거주자우선주차 배정 신청을 2025년 4월 중
접수받은 점 및 신청자는 요금 인상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점 등을
종합적으로 고려하여, 요금 인상을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
수정함.

2. 수정내용

- 부칙 “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”를
“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 1의2의 개정규정 중
노외주차 요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”로 수정함.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부칙 “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”를 “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(다만, 별표 1의2의 개정규정 중 노외주차 요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)”로 수정한다.

수정안 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신설>	<u>부칙</u> <u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u>	<u>부칙</u> <u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u> <u>다만, 별표 1의2의 개정규정 중 노외주차 요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</u>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조의4(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실태조사) 구청장은 법 제3조와 「주차장법 시행규칙」(이하 “시행규칙”이라 한다) 제1조의2에 따라 주차장수급실태조사와 안전관리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
제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「주차장법 시행규칙」(이하 “시행규칙”이라 한다) 제4조제1항제8호”를 “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”로 한다.

제4장에 제21조의5 및 제21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1조의5(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에의 제공) ① 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.

1. 인근 지역 주민의 야간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
 2. 그 밖에 구청장이 교통수요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② 제1항의 시설물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이용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에 따른 주차요금은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범위에서 정한다.
이 경우 급지 수준은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.

제21조의6(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의 감면) 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
부설된 주차장의 관리자는 제21조의5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 비고에 해당
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.

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 1의2의 개정규정 중 노외주차 요
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의2]

거주자 등 전용주차구획 주차요금표(제2조제1항 관련)

(단위: 원 - 1구획당/1월)

구분		전일	주간	야간
정 기 권	노상	40,000	30,000	20,000
	노외	50,000	40,000	30,000
시간주차		- 1시간당 1,200원		
기타	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별표 1에 따른 할인을 적용 2. 공유주차(시간주차 등)요금은 할인을 적용 제외 3. 노상에 설치된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배정자의 동의하에 방문객 등 다수의 차량이 이용시 2만원을 가산한다. (전일운영, 가산금에는 할인을 적용 제외) 4. 자투리땅 등 유휴부지 활용과 부설주차장 개방으로 노외에 조성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은 상근자 이용시 1만원을 가산한다. 		

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

2. 그 밖에 구청장이 교통수요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② 제1항의 시설물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이용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주차요금은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범위에서 정한다. 이 경우 급지 수준은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.

<신 설>

제21조의6(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의 감면) 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자는 제21조의5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 비고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.

<신 설>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 1의2의 개정규정 중 노외주차 요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522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: 2025. 4. .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주차장 실태조사 및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을 규정하고 거주자 우선주차구획 공유주차 요금 신설 등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조문 신설(안 제1조의4)
- 나.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일반의 이용 제공 등 조문 신설(안 제21조의5, 6)
- 다. 거주자우선주차구획 공유 활성화를 위한 요금제 신설(안 별표 1의2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주차장법」
- 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- 다. 협의사항
 - 1) 규제심사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 - 2) 부패영향평가·성별영향분석평가·인권영향평가: 해당 없음
- 라. 입법예고(2025. 3. 27.~ 4. 16./20일간) 결과: 의견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조의4(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실태조사) 구청장은 법 제3조와 「주차장법 시행규칙」(이하 “시행규칙”이라 한다) 제1조의2에 따라 주차장수급실태조사와 안전관리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
제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「주차장법 시행규칙」(이하 “시행규칙”이라 한다) 제4조제1항제8호”를 “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”로 한다.

제4장에 제21조의5 및 제21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1조의5(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에의 제공) ① 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.

1. 인근 지역 주민의 야간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
 2. 그 밖에 구청장이 교통수요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② 제1항의 시설물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이용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에 따른 주차요금은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범위에서 정한다.
이 경우 급지 수준은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.

제21조의6(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의 감면) 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

부설된 주차장의 관리자는 제21조의5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 비고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.

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의2]

거주자 등 전용주차구획 주차요금표(제2조제1항 관련)

(단위: 원 - 1구획당/1월)

구분		전일	주간	야간
정 기 권	노상	40,000	30,000	20,000
	노외	50,000	40,000	30,000
시간주차		- 1시간당 1,200원		
기타		1. 별표 1에 따른 할인을 적용 2. 공유주차(시간주차 등)요금은 할인을 적용 제외 3. 노상에 설치된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배정자의 동의하에 방문객 등 다수의 차량이 이용시 2만원을 가산한다. (전일운영, 가산금에는 할인을 적용 제외) 4. 자투리땅 등 유휴부지 활용과 부설주차장 개방으로 노외에 조성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은 상근자 이용시 1만원을 가산한다.		

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

2. 그 밖에 구청장이 교통수요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② 제1항의 시설물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이용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주차요금은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범위에서 정한다. 이 경우 급지 수준은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.

<신 설>

제21조의6(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의 감면) 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자는 제21조의5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 비고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.